

독 점 소 하 천 정 비 사 업
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
(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)

2015. 6



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

1.1 개발기본계획의 목적·목표 및 필요성

- 본 과업의 목적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에 위치한 “독점소하천 정비사업”으로서 기수립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의거 하천정비를 하여 농경지 및 주택 등을 자연재해와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음

1.2 개발기본계획의 추진근거

- “환경영향평가법” 제2조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·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이에 “환경영향평가법”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정해지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는 <표 1.2-1>과 같다.

<표 1.2-1> 개발기본계획의 추진근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요청시기
자. 하천의 이용 및 개발	2) 「소하천정비법」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	「소하천정비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

자료)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[별표 2]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)

1.3 개발기본계획의 내용

- 계획명 : 독점소하천 정비사업
- 사업시행자 : 영동군
- 사업승인권자 : 영동군
- 기준년도 : 2015년
- 목표연도 : 2016년
- 위 치 :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763번지 ~ 135-3번지
- 하천연장 : 1.10km

○ 공사개요

하천명	하천등급	위 치		계획연장 (km)
		시 점	종 점	
독점천	소하천	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763	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135-3	1.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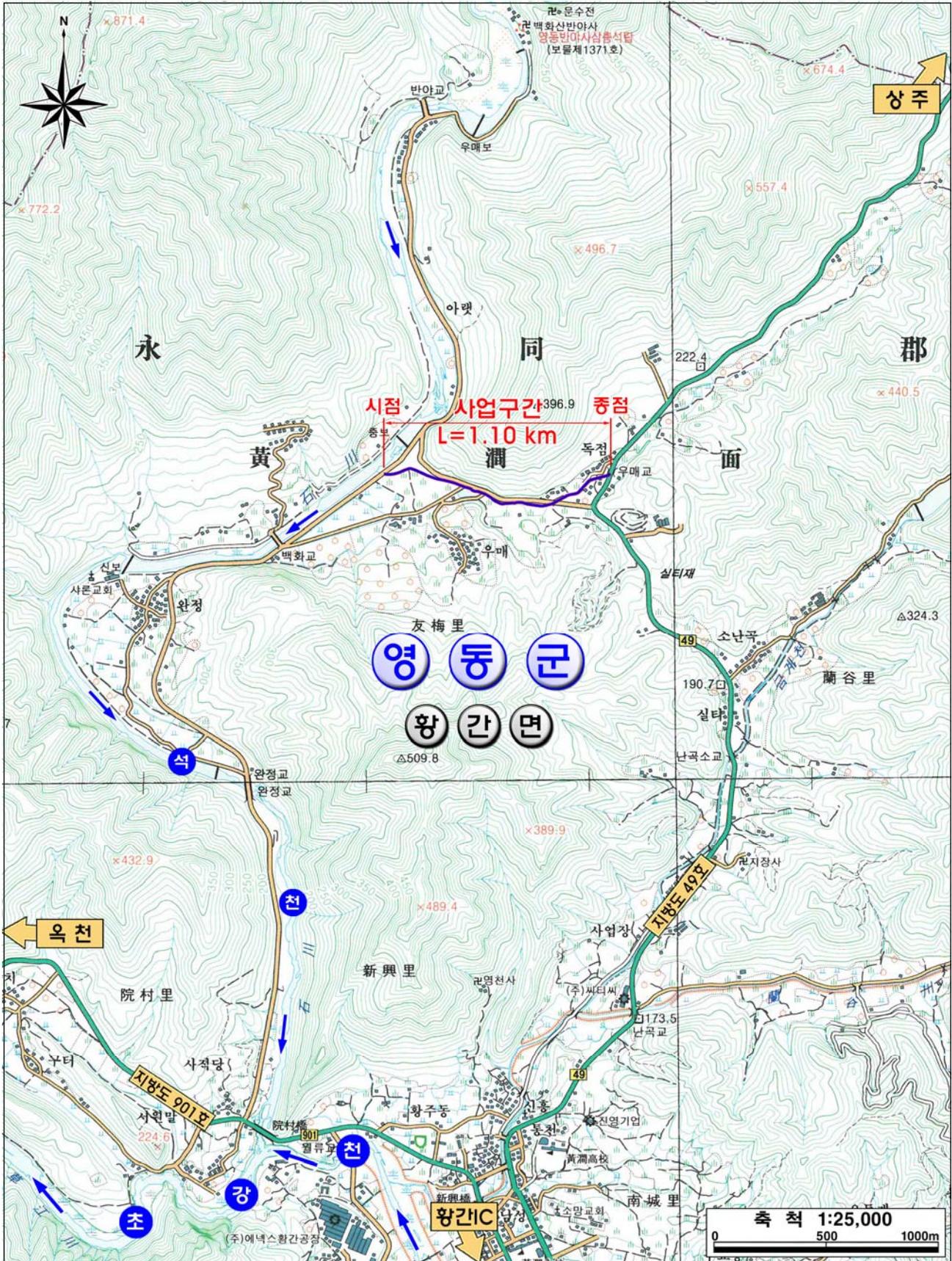
○ 계획 수문량

계획홍수량	39m ³ /sec (30년빈도)	계획홍수위	180.72~250.40 EL.m
계획하폭	8.0m~14.0m	계획제방고	181.32~256.00 EL.m(여유고0.6m)
조도계수	0.033	독마루폭	2.5m

· 현재 하폭은 7.0~13.0m내외, 하상은 모래, 점토질이 대부분임
· 양안으로 제방이 일부 형성되어 있으나, 치수적으로 불안한 형태를 하고 있음
· 강우분석을 통하여 30년 빈도 계획홍수량을 산정
· 계획홍수량으로 독점천에 대한 계획홍수위 및 여유고 검토

○ 시설물 설치계획

교 량	7개소(BOX교) ⇒ 기존 교량 7개소에 대한 능력검토 결과 전부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재설치
낙 차 공	2개소 ⇒ 기존 설치된 여울식 낙차공이 불량하여 재설치
배수통관	14개소(Ø300 12개소, Ø500 1개소, Ø1000 1개소) ⇒ 기존 배수문(통관 포함)에 대한 능력검토 결과 단면부족과 노후화되어 재설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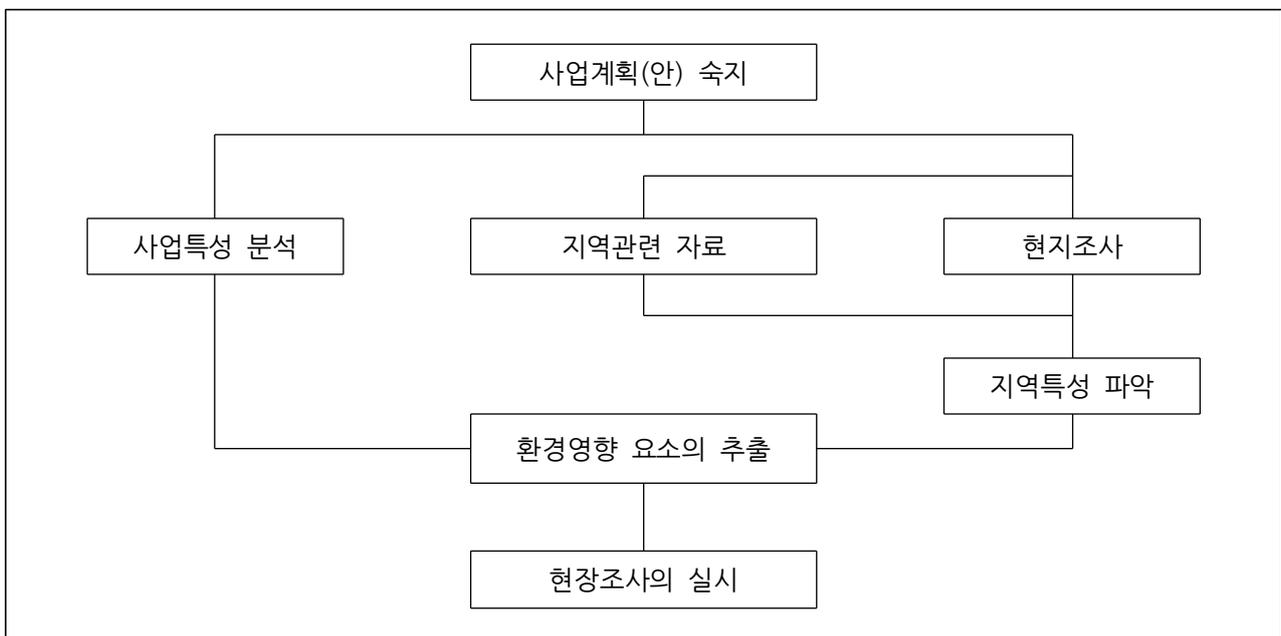
(그림 1.3-1) 계획하천 위치도

독점소하천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(평가항목 등의 결정)

제2장 중점검토항목 선정 및 사유

2.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

- 환경영향요소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해당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주된 요인을 말한다. 본 계획시행에 있어서 공사 및 운영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생태환경, 생활환경 등의 항목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본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공사 및 운영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요소를 추출하여 검토항목을 (그림 2.1-1)의 절차를 거쳐 <표 2.1-1>과 같이 추출하였다.



(그림 2.1-1) 환경영향요소의 추출과정

<표 2.1-1> 환경영향요소 추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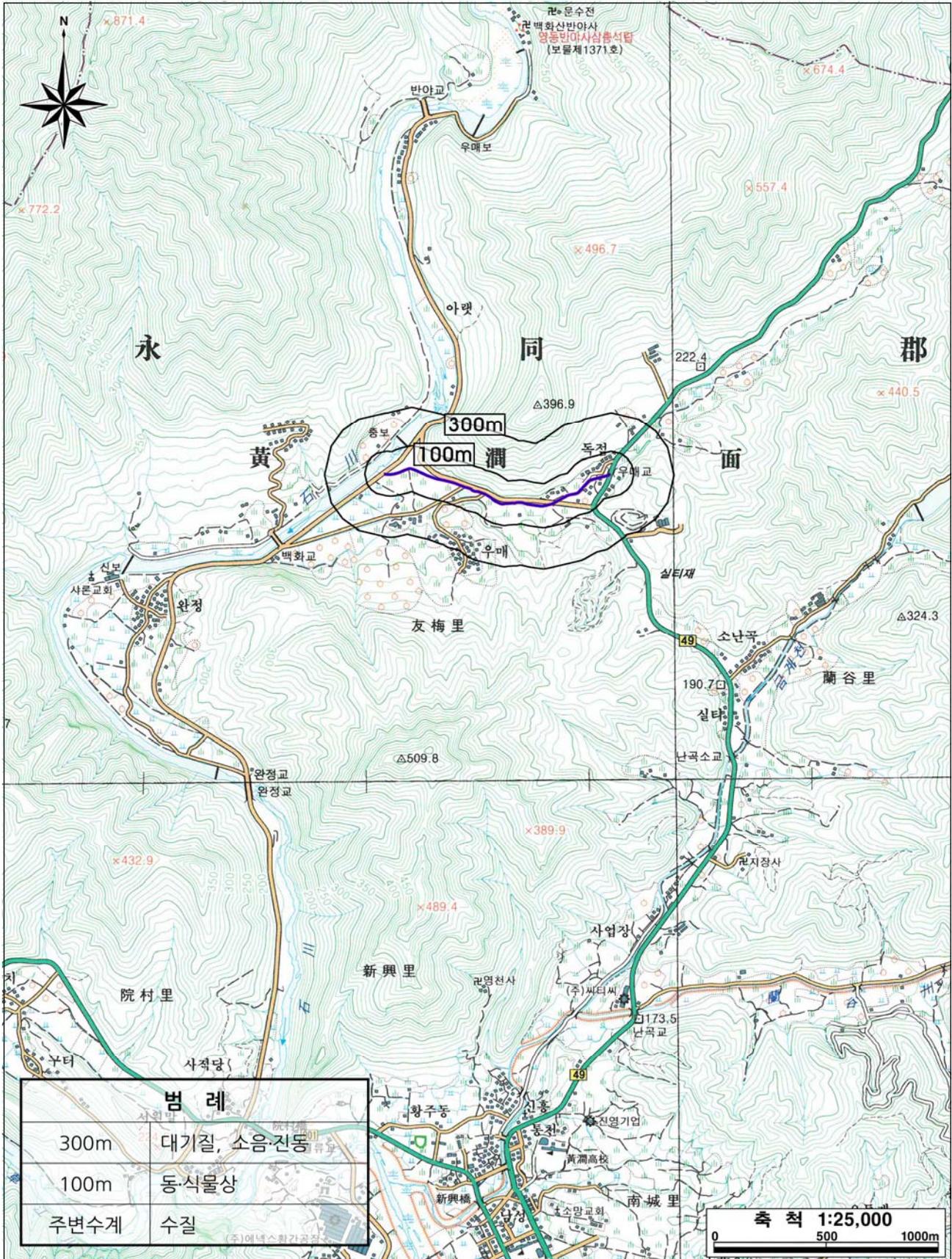
구 분	공 종	환경영향요소	비 고
공 사 시	○ 공사현장	○ 현장 근로자들에 의한 오수발생	
		○ 현장 근로자들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	
	○ 절·성토공사	○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·진동 발생	
		○ 장비투입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	
		○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악화 및 육수생태계의 변화	
	○ 기 타	○ 각종 장비에 의한 폐유발생	
○ 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			
○ 절·성토작업에 의한 경관변화			

2.2 검토항목·범위 설정

- 본 계획하천의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, 생활환경 등 제반 환경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항목별 검토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였음

〈표 2.2-1〉 검토항목범위 설정

검토항목		검 토 내 용	영향범위
자연 환경 분야	기 상	◦ 기상자료와 한국기후표의 통계분석	◦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	지형·지질	◦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정도 ◦ 발생토량의 공급 및 처리대책 ◦ 토사유출퇴적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및 대책	◦ 계획하천
	동·식물상	◦ 사업시행 전·후의 동·식물상 변화 예측 및 대책 ◦ 동·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, 종의 다양도산출 및 서식환경 보호대책	◦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	수리·수문	◦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 ◦ 하류수계 유지용수량 확보방안	◦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생활 환경 분야	토지이용	◦ 이·치수 시설물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	◦ 계획하천
	대 기 질	◦ 오염물질의 특성분석 및 저감대책 ◦ 공사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주거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대책수립	◦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(300m)
	소음·진동	◦ 소음원 조사 및 저감대책 ◦ 이동오염원(소음)의 변화 예측과 대책 ◦ 건설장비가동시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 대책	◦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(300m)
	수 질	◦ 오염물질의 특성분석·예측 및 저감 대책 ◦ 배수차단지역 처리대책 ◦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로 인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	◦ 계획하천 및 인근수계
	친환경적 자원순환	◦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 계획 수립 ◦ 폐유처리 대책수립	◦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	경 관	◦ 자연경관지역의 활용방안 및 지역 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하천계획	◦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


(그림 2.2-1)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도

독점소하천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(평가항목 등의 결정)

2.3 환경현황조사항목 및 영향 예측항목의 선정

- 본 사업시행에 있어 주위 환경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들을 선정하여 중점검토항목과 일반검토항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. 검토항목의 선정은 <표 2.3-1~2>에 나타내었다.

<표 2.3-1> 중점 검토항목의 설정

구 분		선 정 사 유	검 토 내 용
자연 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 서식지의 보전 (동식물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변화여부 ○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의 훼손 및 동식물상의 변화유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 변화 예측 및 대책 ○ 동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, 종의 다양도산출 및 서식환경 보호대책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(지형지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하천의 지형지질 특성파악 ○ 절성토 발생에 따른 부족토, 사토발생 ○ 제방공사시 정자다짐 공사 등 지형변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정도 ○ 발생토량의 공급 및 처리대책 ○ 토사유출퇴적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및 대책
	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(경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연경관지역의 활용방안 및 지역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하천계획
	수리수문환경의 보전(수리수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 ○ 하류수계 유지용수량 확보방안
	수환경의 보전 (수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과 공사폐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염물질의 특성분석예측 및 저감대책 ○ 배수차단지역 처리대책 ○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로 인한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
생활 환경의 안정성	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 (대기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토제거, 절성토, 적재 및 운반, 기자재 투입,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공사시 대기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염물질의 특성분석 및 저감대책 ○ 공사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주거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대책수립
	소음진동 환경 기준의 부합성 (소음진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시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으로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음원 조사 및 저감대책 ○ 이동오염원(소음)의 변화 예측과 대책 ○ 건설장비가동시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

〈표 2.3-2〉 일반 검토항목의 설정

구 분		선 정 사 유	검 토 내 용
생활 환경의 안정성	자원·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(친환경적 자원순환)	◦ 공사시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 및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, 분뇨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	◦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 계획수립 ◦ 폐유처리 대책수립
사회· 경제·환 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◦ 계획하천내 현황과 장래 토지이용 변화	◦ 아치수 시설물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
현황 조사	기 상	◦ 지형·지질, 대기질, 수질의 기본요소	◦ 기상자료와 한국기후표이 통계분석

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

3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

3.1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목적

- 사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계획 초기 단계에서 당해 행정계획 관련 전문가, 협의기관 공무원, 관계행정기관 공무원, 주민대표·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경제, 사회, 환경적 영향에 관한 종합적 검토 및 자문을 구하여 협의단계에서 대안검토항목 종류 부적정에 따른 보완을 최소화하여 협의기간의 단축 및 평가서의 보완을 최소화

3.1.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

- 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” 제8조(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)에 의하면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“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하였음.(본 사업의 편입면적은 19,635㎡임)

〈표 3.1.2-1〉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생략 근거

구 분	항 목	내 용
환경영향평가법 시 행 령	제8조(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)	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(이하 “개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.